

第144回國會

5·18光州民主化運動
真相調查特別委員會會議錄

第10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時 1988年 11月22日 (火)

場所 勞動委員會

議事日程

-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審査된案件

-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1面

(12時5分 開議)

○委員長 文東煥 議席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次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를 開議합니다.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委員長 文東煥 議事日程 第1項 委員會運營에 관한件을 上程하겠습니다.

21日 22日 兩日間에 걸쳐서 4黨 幹事들이 논의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吳景義 幹事께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吳景義委員 지난 21日 22日 兩日間에 걸친 幹事會議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24日은 申鉉禧 鄭昇和 李信範 韓尙錫씨로 하고 25日은 鄭鎬溶 尹興禎 26日에는 鄭東年 鄭基用 沈載哲 金宗培씨의 證言을 듣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月 6·7日 兩日間에 證言을 듣기로 합의를 했는데 12月6日에는 崔圭夏 李煥性 蘇俊烈씨 그리고 12月7日에는 全斗煥 金玉吉 柳炳賢 崔 雄씨 등을 채택을 하고 또한 앞으로 추가로 證言을 申請해서 채택할 사람들은 李鶴樺 權正達 한일수 유병현 신우식 임수원 김일옥 서명원씨 등을 추가로 證人으로서 채택하기로 幹事會議에서 決定을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幹事會議에서 論議가 되었는데 우리 野圈 3黨인 平民 民主 共和間에는 합의가 되고 民正黨側에서는 반대의 의견도 나와서 이 부분에는 우리 全體會議에서 結論을 맺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報告말씀 드립니다.

○委員長 文東煥 吳景義委員께서 방금 報告하신 내용에 대하여 그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가 없으십니까?

○李海瓚委員 議事進行發言하겠습니다.

平民黨의 李海瓚委員입니다.

오늘 본래 11時부터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가 그 시간에 맞추어서 會議에 參席하고자 왔으나 12時가 되서 한時間 동안 會議가 늦어졌습니다. 幹事會議 結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도의 幹事會議 結果라고 하면 늦어질 특별한 事由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時間 동안의 幹事會議에서 이루어진 그 全體會議를 늦춰가면서 해야 할 불가피한 事由가 있었다면 이 점에 관해서 委員長으로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여러 사람에게 대한 證人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證人인 朴俊炳 證人에 관한 합의가 幹事會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本委員은 이 점에 대해서도 幹事會議에서 朴俊炳 당시 20師團長에 대한 證人採擇 論議의 여부가 있었으면 그 結果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文東煥 幹事會議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合意되지를 못했습니다. 合意되지 못한 사항을 여기에 반드시 報告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싶으면 사사로이 얘기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꼭 얘기해야 될 얘기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異議가 없으십니까?

○辛基夏委員 방금 吳景義 幹事께서 報告하신 내용이 3黨 幹事會議에서 野圈 3黨 幹事會議

는 이렇게 合意를 했고 與黨側에서는 反對意思를 표시했다고 그렇게 報告를 하셨기 때문에 명백하게 오늘 議案으로서 議決코자 할 때는 野團 3黨이 合意한 내용을 우리 委員會 案으로서 可決코자 正式 動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正式으로 野團 아까 吳景義 幹事께서 報告하신 野團 3黨의 幹事들이 合意한 내용을 우리 委員會의 案으로 채택할 것을 正式으로 動議합니다.

○李海瓊委員 異議 있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動議가 있으면 再請이 있고 異議를 말씀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용을 밝히시고 議事進行을 하도록 하십시오.

아까 報告하신 가운데 4黨이 合意한 분과 그다음에 民正黨이 합의하지 않은 분 그것을 명확하게 報告하신 吳委員께서 좀 가려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느 것은 4黨이 합의했고 어느 것만은 民正黨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그것을 좀 가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吳景義委員 25日 證人으로 나올 鄭鎬裕씨 부분에서 民正黨側에서는 反對를 했고...

○委員長 文東煥 그것은 合意된 부분이에요.

○吳景義委員 예. 그것이 나중에 結論적으로...

○委員長 文東煥 본래 合意됐던 것을 再論하다가 그것이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것은 合意된 것입니다.

○吳景義委員 그리고 지금 여기 報告事項에서는 현재 報告를 안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文東煥 그것이 무엇인지 專門委員이 참석하셨던 것이... 報告하는 것이 다 合意된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吳景義委員 저도 다 合意된 것으로 했는데 아까 專門委員한테 民正黨 李敏雙 幹事 注文이 우리는 이것을 合意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報告書를 作成하는 그 專門委員側에서는 이것이 民正黨側에서 그런 注文을 但書로 남기고 갔기 때문에 合意했다고 봐 줄 수 없다 이런 結論이 납니다.

○委員長 文東煥 어떻게 이렇게 혼선이 됐나

다음 번에 사흘 동안에 하는 것은 合意됐고 그것은 合意되었어요.

鄭鎬裕씨랑 다 그전에 合意된 것이 再論되려고 하다가 그것이 否決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12月6日 7日 모이는 대목에 있어서 全斗煥 崔圭夏의 대목. 거기에 대해서 民正黨에서 異議를 提起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다시 우리가 決議해야 할 문제고 그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表決했으면 좋겠습니다.

○金光一委員 表決에 들어가지 전에 아까 이쪽에서 質疑한 내용은 答辯해 주셔야지요.

朴俊炳이 證人이 채택됐나 안 됐나 하는 문제는?...

○吳景義委員 그것은 채택이 되지 않았읍니다. 채택이 되지 않았읍니다. 거론이 됐었으나...

○趙洪奎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지난 번에 公開會議席上에서도 그랬고 또 幹事會議에서도 舉論이 되었고 어제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朴俊炳씨 光州民主化運動 당시 그에 直接的인 관련이 있는 당시의 20 師團長 문제가 本人이 光州特委의 證人으로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民正黨 事務總長職까지 辭意를 표명했는데 本人은 이미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委員會에서 證人으로 채택하는 것을 舉論조차 안했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個人的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民正黨 事務總長까지 辭意를 표명하고 光州特委에 證人으로 출석을 하겠다고 公式的으로 發表가 된 이 마당에 무슨 이유로 어떤 사연에서 우리 委員會에서는 公開의이든 非公開의이든 거론조차 안됐는지 만일 제 議事進行 檢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일에 證人採擇 追加分 李鶴捧 權正達 한일수 신우식 임수원 김일옥 서명원 유병현 이것까지 확정을 시킨 것인지 이 案이 動議案이... 저는 최소한 12月6日 7日 날짜에 넣기가 어렵다면 證人採擇 追加分이라도 넣어야지 어떻게 해서 거론조차 안되는지 거기에 대한 幹事들의 解明이나 委員長의 解明을 듣지 않고는 이 案에 대해서 動議案에 대해서 修正動議案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文東煥 제가 對答해 드리지요.

朴俊炳씨에 관한 것은 新聞에 그 記事가 나오기 전에 우리 쪽 얘기해서 討議했고 그때는 朴俊炳 事務總長이 자기가 사임하겠다는 意思를 표명하기 전입니다. 그때에 決議한 것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鄭鎬溶씨 얘기가 나오다가 그것이 취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決議라는 것은 그때에 決議된 것이 그냥 나온 것입니다.

여기다가 朴俊炳씨를 여러분이 追加하겠다면 여기서 이제 말한대로 修正動議案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決議는 討議하다가 그때는 그런 式으로서 幹事會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朴泰權委員 朴俊炳證人에 대해서는 民正黨이 參席을 안 한 마당에 이 野3黨하고 無所屬 朴燦鍾委員도 合意해 가지고 單一案을 내면 되지... 그러니까 修正動議를 내야지요.

○李海瓊委員 제가 發言權을 얻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4日 25日 26日 證人에 대해서는 異議가 없습니다. 그리고 12月6日 崔圭夏 李燦性 蘇俊烈 12月7日 全斗煥 金玉吉 崔 雄 세 사람을 證人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異議가 없습니다. 다만 本委員이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崔 雄少將은 당시 空輸旅團長 중에 한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追加證人으로서는 現地에서 部隊長 師團長으로서 활동한 朴俊炳 20師團長 최세창 당시 空輸3旅團長 신우식 7空輸旅團長 세사람 그리고 앞서의 聽聞會 過程에서 國保委 論議過程이라든가 일련의 과정에서 자주 거명이 된 李鶴捧 權正達 유병현 그리고 당시 全南大學校 學生課 職員으로서 서명된 모두 7명의 사람을 일단 證人으로 채택할 것을 修正動議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辛基夏委員 말씀하세요.

○辛基夏委員 證人 朴俊炳씨에 대한 幹事會議에서의 學論 與否와 관계되어서 幹事會議가 어떤 朴俊炳씨를 회피하는 것같은 의심을 갖고 있는 것같기 때문에 이에 대한 解明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원래 제가 朴俊炳 李鶴捧 權正達 柳炳賢 徐銘源 등 다섯명을 저희들이 野圈 3黨間에 合意를 봐서 신청을 學論을 했는데 民正黨의 입장에서 어차피 調査는 하지만은 朴俊炳이가

現在 民正黨의 事務總長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證人調査 日字는 변론으로 하고 채택 자체를 조금 늦추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提議가 들어와서 여러가지 우리 野圈 3黨間에는 意見이 나누어 진 것이 없이 해야 한다 등등 여러가지 말이 있었지만은 어차피 證人을 調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며칠전에 신청을 하느냐 늦게 신청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어서 이 정도야 與野間에 幹事會議에 양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서 李鶴捧 權正達 柳炳賢 徐銘源이만 일응 이번에 채택을 하고 어차피 지금 했다 하더라도 이 다음 聽聞會인 12月6·7日 頃에는 訊問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期日에 訊問을 하려고 해도 이 다음에 11月中에 신청을 해서 채택해도 관계 없다 그래서 與黨幹事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 가지고 여기서 申請 自體를 좀 늦추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겠다 그래서 朴俊炳 證人을 여기에서 빼게 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李鶴捧 유병현 서명원 이 네 사람을 우리가 申請을 했고 民正黨 쪽에서 한일 수 신우식 임수원 김일옥 이 네 사람을 우선 申請을 했습니다.

우리 特委에서 조사할 證人들이 비단 이 여덟 사람 뿐이 아니라 앞으로는 數十名 어찌면 100名이 넘을지도 모르는 굉장한 많은 證人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최세창이라든가 朴俊炳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證人 豫定者에서 뺀 것도 아니고 멀리 무슨 내년 3月 4월에 조사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닌 것이어서 하나의 나름대로의 幹事會議의 協議事項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어떻게 보면 野圈에 휘말려 가지고 光州特委를 우동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의심을 주었다는 것은 대단히 저희들 幹事들의 不德의 所致라고 생각되고 또 이에 대하여 委員들에게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못드리고 이해를 못시켜드렸는가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一委員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黨 總裁도 나오고 副總裁도 나왔는데 總長이 미룬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니까 4次 證人追加採擇하는데...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일단 합의된 것은 접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해서 여기서 결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金光一委員 그러면 3次 聽聞會까지 접수하고 4次에 할 證人採擇만 따로 의논하십시오.

○委員長 文東煥 예.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報告한 것에 異議가 없으시면 이것을 채택하고 그리고 미진한 것은 계속해서 再議하셔서 여기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動議를 다시 한번 하세요.

○辛基夏委員 아까 動議를 했었습니다마는 吳景義委員께서 報告하신 내용이 野團 3黨 幹事들간의 合意事項이고 民正黨 幹事는 動議를 하지 않았다고 報告가 되었기 때문에 野團 3黨간의 合意事項을 正式으로 여기서 議決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動議에 再請있습니까?

(「再請입니다」하는 이 있음)

(「三請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修正動議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李海瓊委員 動議案에 異議가 없는데 몇 사람의 證人을 채택하는 議題이기 때문에 첨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修正動議를 提案하겠습니다.

12月7일까지 3次 聽聞會가 있고 나서 이어서 당시 20師團長이었던 朴俊炳 그 다음에 3空輸旅團長 최세창 이 두 사람을 추가로 같이 證人으로 채택해 줄 것을 修正動議案으로서 提案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이제 修正動議案에 대해서 動議側이나 再請側에서 받아 들입니까?

(「받아 들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辛基夏委員 委員長!

○委員長 文東煥 예.

○辛基夏委員 방금 可決된 사항 이외에 우리 聽聞會를 처음으로 실시할 때인 지난 18日 우리는 聽聞會의 證人으로서 全斗煥 證人과 崔圭夏 證人을 채택해 가지고 그 날 出席要求書를 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崔圭夏 證人과 全斗煥 證人은 證言鑑定法上的 아무런 正當한 이유없이 우리의

出席要求에 不應하고 그 날 出席하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崔圭夏 證人과 全斗煥 證人을 이미 12月6日과 7日에 出席시켜서 訊問하자는 것을 決議한 바 있지만 또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 正當한 이유가 없이 안 나왔기 때문에 國會에서의 證言·鑑定에 관한 法律第6條에 의해서 同行命令狀을 發付할 것을 動議합니다.

(「再請입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文東煥 動議에 再請이 있었읍니다.

○金光一委員 委員長! 거기에다가 李煥性씨를 보태야 돼요.

○委員長 文東煥 李煥性씨는 同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金光一委員 아니 본인이 나오겠다고 해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委員長 文東煥 그러나 拒否했어야 同行을 할 수 있습니다.

○金光一委員 아니 停會중에 이 다음 時間을 告知했지 않습니까? 告知했는데 正當한 이유없이 不出席했지 않습니까?

○委員長 文東煥 病이 있어서……

○金光一委員 病이라고 稱病만 했지 자료가 나왔읍니까? 뭐 이 다음에 나온다 해 가지고 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辛基夏委員 자기가 추후에 다시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金光一委員 그러나 어쨌건 그 때는 자기 마음대로 正當한 이유없이 續行하는 期日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續行時間을 告知해 주었다 하는 것은 다음 期日에 出席하라는 告知인데 마음대로 안 나왔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중간에 도망가는 證人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李煥性씨도 여기에 추가해야 돼요. 同行命令狀을……

○委員長 文東煥 아뉘는 動議側에서 받아 들이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改議를 하셔야죠. 그것이 改議입니까?

○金光一委員 여하튼 金光一委員은 李煥性에 대한 同行命令狀을 발부해야 된다는 제의를 했다는 사실을 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文東煥 기록은 자동적으로 남지요.

動議 再請이 들어왔습니다.

崔圭夏 前大統領 全斗換 前大統領 두분에게 同行命令狀을 발부한다는데 대해서 異議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可決되었습니다.

○金泳鎮委員 지난 온 국민의 관심속에 개최되었던 18日의 聽聞會에서 證人으로 출두한 李煥性씨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發砲命令에 대한 命令權者를 真相糾明하기 위해서 本委員이 發言을 했습니다. 그때 自衛權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本委員은 光州 現場에서 戒嚴軍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 만행의 현장을 도표를 그려 가면서 내용을 추궁을 했습니다. 또 그때 잔인하게 학살당한 손이 뒤로 묶여져 있는 시체가 분명히 찍혀 있는 현장 사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李煥性 당시 證人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손이 뒤로 묶여 있는 시체가 이렇게 사살당한 그런 모습은 그당시 戒嚴司令官으로서 책임을 느낀다 하는 그런 答辯을 분명히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19日 民正黨의 李敏燮 幹事가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聽聞會가 生放送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가지고 하는 말이 출처도 분명하지 않고 근거도 정확하지 않은 그런 사진들을 聽聞會에 제시를 해가지고 국민을 호도한다 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뜻 있는 국민들이 光州實狀을 확인하는 「비디오」를 상영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분명히 정황증거가 확실한 도표를 제시하고 사진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聽聞會에 대해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特委에서는 「비디오」를 적정한 날짜를 택해서 「비디오」를 상영을 해서 모든 국민의 알 權利를 충족시켜 주고 또 民正黨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그 학살 현장이 출처도 모호하고 근거도 없는 것들을 제시했는지 정황증거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상영하기로 本委員은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비디오」를 어디에서 상영합니까?

○金泳鎮委員 聽聞會하는 도중에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聽聞會 기간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文東煥 聽聞하는 도중에 「비디오」를 상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正式 動議가 있습니다.

○金光一委員 지금 국민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비디오」를 상영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聽聞會의 목적하고는 다릅니다. 그 점은 우리가... 왜냐하면 聽聞會라고 하는 것은 國會 調査委員인 우리 調査委員이 주체가 되어서 뭐 사실을 어떻게 됐는가 조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 장면을 국민한테 보여 주는 것을 방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그 근본적인 것을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조사의 주체가 調査委員會라는 점 그리고 「비디오」를 보는 것은 調査 立法의 하나로서 檢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비디오」를 상영해야 된다는 것은 調査方法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다음 둘째 만약 「비디오」를 상영한다면 「비디오」도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特定을 해가지고 「비디오」가 전부 몇개 누가 촬영한 어떤 내용의 「비디오」 또 누가 소지하고 있는 것이 몇개라는 것을 우리가 特定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언제 다시 檢證할 것인가 지난 번에 檢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새로 들어온 委員들이 많아서 저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을 特定을 한 후에 檢證하는 장면을 공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에 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뜻 「비디오」를 공개하자는 動議는 그 내용의 特定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의논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金泳鎮委員 本委員이 이 문제를 제안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들으시면 내용을 납득할 것입니다.

정황 증거가 확실한 학살의 현장을 사진과 도표를 그려 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聽聞會라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聽聞會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特定政黨의 책임을 맡고 있는 幹事가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또 상황증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 가지고 국민을 호도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증거로 제시해서 국민에게 알 權利를 달라 하는 주장을 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本委員이 어느 장소를 택해 가지고 그때 하자 그런 주장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단 그런 동기를 부여했던 그런 출처가 분명하고 학살의 현장이 확실함에도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糾明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니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제시를 해서 그런 異議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증거를 제시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洪奎委員 金泳鎮委員의 말씀의 취지가 옳은데 방식을 잘 제시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추가를 하는 것인데 金泳鎮委員의 뜻에 추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시 戒嚴司令部 分所長이었던 蘇俊烈證人에게 당시 정황을 「비디오」를 확인시키는 절차를 갖춰 주실 것을 勸諭합니다. 당시 戒嚴分所長이었던 蘇俊烈證人에게 현장의 「비디오」를 그 사실 여부를 채택여부가 아니라 「비디오」가 그 사실과 같은가를 확인해 주는 절차를 갖추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런 것은 내가 듣기로 聽聞會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언제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애요. 아까 吳景義委員한테 發言權을 드렸으니 그것을 참작해서 말씀해 주세요. 發言하시는 분이 聽聞會에서 發言하시는 분이 필요하다면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보일 수가 있어요. 자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은 결의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세요.

○吳景義委員 저희들 幹事會議에서 있었던 얘기중에서 지금 金泳鎮委員님 말씀과 같은 뜻으로 거론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도 그 뜻을 원칙적으로 다 좋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아 보면 우리 野圈에서 내놓은 「테이프」도 있고 또 與圈에서 내놓은 「테이프」도 있는데 그러자면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그 중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필름」을 국민들한테 내보여야 되겠는데 그런 평가라든지 실무적인 작업을 하는데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特委에서 결정지은 사항을 放送局에서 받아 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放送局에서 받아 주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放送局은 放送局 대로 입장과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放送局에서 專門家가 또 나와서 편집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술적인 실무적인 과정을 옮겨 거쳐서 완벽한 하나의 말하자면 작품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철저히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여야 그 진상이 밝혀질 것이지 잘못 서투르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幹事會議에서 그 얘기가 있다가 보류를 했더랬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고 그 뜻을 우리 모두 다 같은 생각으로 金委員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세요.

○委員長 文東煥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비디오」를 보여 드리는 것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質問하는 사람이 質問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方便으로 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전에 그림을 보였듯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것은 자기의 證明하려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의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國民들에게 光州「테이프」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해서 放送局에 부탁해서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 特委에서 決議해서 放送局에 요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는 어떤 어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幹事會議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放送局에 부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檢證하려고 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은 그 質問者가 자기 質問하는 것에 필요한 것을 골라서 요전에 그림을 보이듯이 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저 그것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셔서 發言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泳鎮委員 말씀하신 委員長님의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앞으로 質疑한 委員이 「테이프」를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의 質問에 대한 情況證據를 제시하기 위해서 갑자기... 聽聞會를 다루었던 우리 공동의 합의도 없이 자기의 주장하는 바를 명료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가령 「비디오」를 들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우리가 主質問者는 40分이고 補助質問者는 30分입니다. 그런 時間上의 어려움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길이 있다면 적어도 이 特委에서 한번은 거쳐가지고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聽聞會에서 그런 식으로 내놓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放送社에다가 우리 特委 이름으로 요청을 공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한번 걸려야 됩니다. 걸려야 되는데 그 싹점이 나는 왔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많은 國民들이 지금 「비디오」를 보여 달라는 요청이 오고 또 방금 本委員이 제시한대로 李煥性 戒嚴司令官을 상대로 質疑하는 과정에서 확인시킨 내용을 여기에 4黨중에서 한 政黨이 출처도 분명치 않은 내용을 가지고 國民을 誤導한다는 식으로까지 나와 있으니 오늘 이 特委에서는 마땅히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具體的으로 日時를 정한다든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特委에서 委員이 質疑하는 과정에서 하자는 말로 제안 안했습니다. 放送局에서 하자는 제안도 안했으니까 委員長께서 이 두가지 뜻을 살려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지금 논의해가지고 결정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濟委員 金泳鎮委員의 말씀의 뜻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査의 主體는 우리 特別委員會입니다. 真相調査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聽聞會를 開催하고 있고 聽聞會라고 하는 것은 證人이나 參考人의 陳述을 듣는 방식입니다. 그 밖에 調査方法으로는 檢證이나 鑑定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證據 우리는 錄書「테이프」또 그밖에 錄音「테이프」 이런 것들은 檢證의 대상 일뿐이지 聽聞會에서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錄書「테이프」나 錄音「테이프」에 관해서는 우리 調査委員會에서 그 내용을 檢證해보자 해가지고 檢證을 신청하고 또한 그 錄書「테이프」가 과연 그 당시 實相을 정확하게 찍은 것이냐 아니면 「픽션」으로 달리 구성을 해서 찍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疑問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직접 錄書한 사람 또 그것이 實相을 직접 찍은 것이라는 것을 擔保할 수 있는 사람을 檢證場所에 證人으로 채택을 해서 그 무슨 성립의 진정을 입증시킨 다음에 우리가 檢證을 해서 그것이 우리 調査委員에 나중에 調査報告書의 證據方法으로 채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聽聞會場에서 그것을 「비디오」를 試寫해 가면서 證人한테 묻는 것은 聽聞會의 調査方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金泳鎮委員께서는 이 真相調査에 유용한 錄書「테이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錄書者라든지 또 언제 찍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特定해가지고 檢證申請을 하시고 또 그것에 관해서 성립의 진정을 입증시킬 證人이 있으면 동시에 證人申請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檢證 日時 場所를 정해서 檢證 施行을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放送局에서 放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委員會에서 放送을 요청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文東煥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테이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대해서는 다 합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이것은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도 다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방법 절차 원칙 등등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의가 있는데 이것은 좀 더 各黨에서 검토해 보고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幹事會議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좋겠습니다.

○金泳鎮委員 聽聞會에서 방영을 하는 방법이 방금 여러가지 의견대로 조금 再考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李仁濟委員께서 방금 한가지 또 새로운 案을 주셨으니깐 그 案을 방금 우리가 동의했던 案과 합해서 檢證班으로 해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서 幹事會議에서 이 문제를 檢證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聽聞會에 내놓는 것이 좋은 방법 인지를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비디오」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반드시 열어 주고 그리고 방금 本委員이 말한대로 現場의 寫眞과 情況證據를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出處도 모호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한 반증은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검토하는 것을 幹事會議에다가 일임하도록 하시고 동의는 그냥 처리하는 방식……

이것은 幹事會議에 일임해주시면 幹事들은 各黨의 의견을 종합해서 중요한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을 다시 필요할 때는 여기에 내놓아서 여러분의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金光一委員 이것은 뭐 議事進行이라 할지 또 우리 사이에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 갈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같은 野黨인 平民黨에서 절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제가 調査委員의 法律家的인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사는 원래 어떤 客觀的인 사실을 놓아

놓고 공정한 입장에서 利害關係가 없는 사람들끼리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法の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光州事件이라 할 때 光州地域出身들의 그 당시의 사건에 참여했던 분들은 피해를 당했다 하면 일종의 利害當事者가 됩니다. 또 加害者側인 軍隊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또는 政府側에 있었다면 역시 加害當事者로서 利害當事者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제가 公正性을 해한다든지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지난 歷史를 審判하는 자리에 있다면 훗날 이 光州抗爭事件의 調査特委가 역시 공정하게 운영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역시 냉정한 국민들 또는 史家들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모든 委員들이 바로 그 사건과 直間接의 연관은 있다 하더라도 직접 利害當事者는 아니다 또 利害關係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公正性은 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그냥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우리 公正性을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나간다면 우리 委員들간에 訊問하는 과정에서 내가 바로 利害當事者다 하는 표현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委員의 자격이 상실되는 그런 표현은 조금 삼가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國政監查調査法에는 그런 경우에는 除斥… 어떤 경우에도 참여 못한다는 除斥도 있고 스스로 나는 公正性을 해한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 내가 물러가겠습니다 하는 回避制度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制度가 아무에게서도 아직 提起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언젠가는 提起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 각자가 거기에 대한 신중한 태도들을 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나 남겨 둡니다.

○委員長 文東煥 좋은 參考發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特委가 설치될 때 이 特委의 委員長은 平民黨이 아닌 다른 政黨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 平民黨에서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꼭 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平民

黨이 委員長을 맡을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委員長이 湖南出身이 아닙니다. 滿洲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혐의는 조금 벗을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平民黨에서도 初選議員인 저에게 맡긴 줄 압니다. 우리 平民黨에서도 우리 누구나 다 사실 이것은 감정에 치우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是是非非를 가려내는 것이 우리 목적이기에 그 점에서는 우리 피차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張石和委員 말씀하십시오.

○張石和委員 周永福證人에 관해서 지난번에 제가 訊問하는 과정에서 資料를 제시해가면서 僞證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밝혀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李海瓚委員이 가세를 해서 全體會議에서 周永福證人에 관해서 僞證으로 告發하기로 하자 라고 하는 議事進行發言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기왕에 全體會議가 있으니까 周永福證人에 대해서는 여기서 僞證으로 告發키로 全體會議에서 合意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점에 관해서 周永福證人에 관해서 僞證으로 告發하는 그런 案을 動議案으로 제가 提案할까 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고맙습니다.

幹事會議에서 이것을 動議案으로 提案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빠진 것 같아요... 提議를 했다는데 어떻게 報告하는 節次에서 빠졌습니다. 우리 幹事會議에서 이것을 告發키로 決定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잡해서 어떻게 그것이 명확히 되지 않았군요.

가만 있자 爛商討議하십니까 公開討論하십니까?

○金光一委員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정리해 봐 주세요.

○金光一委員 告發問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聽聞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僞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 證인들이 교묘하게 僞證하거나 또는 證言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응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느 것이 眞相인지를 알아보자 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느 證人의 어느 證言部分이 僞證인 것 같다 하는 혐의를 강력하게 가지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調查한 모든 것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僞證이다 關係當局에 告發할 때에는 우리가 내놓은 資料에 의해서 僞證이 성립될 정도가 되는 것이 國會의 권위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람직한 것은 이 調查가 끝날 때 結論으로서 僞證與否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政治的인 효과를 놓고 볼 때는 앞으로의 證인들이 僞證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또 告發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告發을 하는 경우에 나중에 僞證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또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아서 僞證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搜查機關의 結論이 내릴 때 우리 권위를 생각한다면 그 折衷案으로서 오늘 周永福證人에 대해서 僞證罪로 告發하고자 한다는 動議만 성립시켜놓고 그 動議를 받아들여느냐 안 들이느냐 討論이라든지 기타 이것은 마칠 때쯤 가서 한다는 것으로서 動議를 성립시키는 정도까지 해놓는 것이 아마 折衷案으로서 좋을 것같이 생각합니다.

○辛基夏委員 委員長!

○委員長 文東煥 예. 말씀하십시오.

○辛基夏委員 지금 同僚委員 金光一委員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일응 저희들이 周永福證人과 李煥性證人의 證言을 들었을 때에 우리들이 아직까지 수집한 資料와 듣는 바에 의하면 僞證임이 명백하다고 느껴지는데 이제 證人 몇 名 證言을 듣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몇 名의 證言을 더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客觀的인 資料에 의해서 명백하게 僞證 또는 國會 모욕이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을 때 다시 告發節次를 추후에 취하기로 하고 그랬다고 해서 우리 光州特委의 調查活動이 완전히 끝났을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政治的인 의미의 차원보다도 이른바 5共時節 또는 그 이전의 執權過程에서 不正과 不法을 많이 저질러 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줘야 하는데 더우기 그렇게 어지럽힌 사람들이 우리 光州特委에 나와서 僞證을 했다면 國會 모욕을 했다는 것은 바로 國民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이 절차는 바로 本委員이 提議하려고 했는데 원래 서로 委員들 사이에 異見이 있어서 더우기 與黨委員이 참여하지

않고 우리 野黨委員들만 와 있는 자리에서 表決에 의해서 또 野黨委員끼리 決定한다는 것은 더욱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리 野黨委員들만이라도 滿場一致로 決議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제가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同僚 張石和委員께서 이미 提議를 해 놓으셨으니까 그동안에 具體的인 僞證事實에 대한 정리도 하고 또한 방증도 더욱 수집을 해서 時間的인 여유를 갖고 생각하고 討論하면서 告發節次를 취하기로 하고 張石和委員의 動議를 제가 再請으로하기로 하고 일응 제류시켜서 이 다음에 다시 討論하고 결정하기로 하고 各黨의 의사를 모아서 우리 3黨 幹事會議에 委任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좋겠지요?

○委員長 文東煥 이 점은 어떻습니까?

僞證罪로 動議하는 경우에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 때문에 僞證罪로 한다고 하는 摘示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調查 檢討해서 幹事會議에 일임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충분히 해가지고서 이 摘示가 된 動議를 補充된 動議를 다시 提出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그렇게 일단 再請하셨으니까 動議 再請이 있고 그러나 여기까지만 하고 그것을 내용을 채워서 다시 여기 제시할 때 議決하도록 그렇게 動議만 成立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案件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會議를 마치고 散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3時1分 散會)

○出席委員

| | | |
|-------|-------|-------|
| 文 東 煥 | 金 泳 鎮 | 辛 基 夏 |
| 李 海 瓚 | 趙 贊 衡 | 趙 洪 奎 |
| 崔 鳳 九 | 金 光 一 | 朴 泰 權 |
| 吳 景 義 | 李 仁 濟 | 張 石 和 |
| 金 文 元 | 金 仁 坤 | 玉 滿 鎬 |
| 朴 燦 鍾 | | |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 | |
|-----------|-------|
| 專 門 委 員 | 陳 在 勳 |
| 立 法 審 議 官 | 金 永 善 |